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가단537782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담당변호사 권성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6.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C에게 약정이율 연 25%, 지연이율 연 30%, 변제기일 2013. 2.

6.(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C이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을 하였으며, 차용증 하단에 피고가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8.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총 2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9. 22. "C은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였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서명·무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 어떠한 지위에서 이를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는 위와 같이 피고가 어떠한 의사로 서명·무인하였는지 불명확한 이 사건 차용증이 유일하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22. 6. 8.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도 피고는 제외한 채 C만을 상대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위와 같이 서명·무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